

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계획·심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10인 내외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8.1.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8.31.)

④ 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4.3.8.)

제3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
2. 입학모집 전형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
제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에 입학전형사정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26.8.31.)

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사정원칙의 심의
2. 신입학 합격자의 사정

③ <삭제 2026.8.31.>

1. <삭제 2026.8.31.>
2. <삭제 2026.8.31.>
3. <삭제 2026.8.31.>
4. <삭제 2026.8.31.>
5. <삭제 2026.8.31.>
6. <삭제 2026.8.31.>
7. <삭제 2026.8.31.>
8. <삭제 2026.8.31.>

제5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8.1.)

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한다.

③ <삭제 2026.8.31.>

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8.31.)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보고 및 시행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20.8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